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3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6월 7일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3일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및 2024년 6월 27일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나. 2025년 1월 9일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25년 2월 18일 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다.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

하기로 함.

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5. 2. 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 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 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 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채권금융회사"라"를 ""채권금융회사등"이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채권금융회사"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권금융회사로부터"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금융회사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로, "채권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금융회사가"를 "채권금융회사등이"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채권

- 금융회사는"을 "채권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3의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 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 3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③
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u>"채권금융회사"라</u> 한	
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u>라</u>
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u></u>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를 <u>채권금융회</u>	채권금융회사
<u>사</u> 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u>드</u>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②
<u>채권금융회사는</u> 개인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u>.</u>
③ 위원회는 <u>채권금융회사로부</u>	③ <u>채권금융회사등으</u>
<u>터</u>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로부터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	4

- 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u>채권</u>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u>채권금융회사는</u> 그 채무조정안 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 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u>채권</u>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 정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u>채권금융회사</u>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 저 정은 <u>채권금융회사가</u>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 저 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

	- <u>채권금</u>
융회사등에	
채권금융회사등은	
5	
	-채권금
융회사등이	
<u>.</u>	
<u>⑥</u>	
	<u>채</u>
권금융회사등	
⑦ (현행과 같음)	
세73조(채무조정의 방법)	
<u>채권금융회사등이</u>	
1. ~ 6. (현행과 같음)	
세74조(채무조정의 효력) (1)

정안을 개인채무자와 <u>채권금융</u> <u>회사가</u>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 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 로 본다.

- ② <u>채권금융회사가</u>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 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 일하게 미친다.
-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생 ^전략)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채권금융
회사등이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세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현
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u> 장학재단</u>
3의3. 「전기사업법」에 따른
<u>전기판매사업자</u>
3의4. 「전기통신사업법」 제2
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
업자(동법 제38조제1항에 따
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
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

<신 설>

4. (생략)

- 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 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u>채권금융회사는</u>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생략)

<u>함</u> 한	<u>·다)</u>			
3의5.	「정보통	신망	이용결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	11호에	따른	통
<u>신</u> 과	·금서비스>	제공자	로서 디	통
령령	으로 정하	는 자		

4.	(현행과	같음)
----	------	-----

③ <u>제2항제2호·제3호</u> 또는 제
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4	채권금융회사등은	

⑤ (현행과 같음)